

아.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: 관계 법령에 의함

※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함
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부과 시행

- 근거: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른 「학교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부과방안」 안내
(고용노동부) 노사협력과-6768(2022.9.16.)

• 내용:

| 구분 | 변경내용 |
|--------------|---|
| 과태료 부과 기준 | 교육청 관할 내 각 학교가 피보험자격 미(지연)신고·거짓신고한 경우 교육청 관할 시·도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|
| 과태료 상한 | 관할 교육청 기준으로 100~300만원 설정 |
| 비고 | ※ 미(지연)신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, 해당학교 부담 및 행정적 조치 |

자. 유의사항

-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
- 계약제교원 채용에 있어 비위사항 발생 시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채용비리 발생교는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.

②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

가. 기간제 교원

1) 임용 사유 및 요건(교육공무원법 제32조)

가)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(제1항 제1호, 제2호)

나)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(제1항 제3호)

- 정원외기간제교원(미배치기간제 포함)이 해당하며, 교육청의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

다)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(제1항 제4호)

라)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(동법 제1항 3호~4호,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 2항)

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 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2) 임용 자격 및 임용 제한 사항

가) 임용 자격 : 교원자격증 소지자(실기교사 교원자격증 제외)

나) 임용 제한 사항

①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
(교육부 교원정책과-7964(2014.12.31.)호, [2015.3.1.자 시행])

◦ 초등: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가능하며,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- 2018.5.1.자 시행)